[서식 예] 채무부존재확인의 소(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)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〈〉〉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회장 ◈◈◈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부존재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금 ○○○○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○. ○. 피고가 관리하는 소외 ●●●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를 소외 ◎○◎가 신청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 권을 취득하였습니다.
- 2. 소외 ●●●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○.까지 9개월 동안 관리비 금 ○○○○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, 원고는 소외 ●●●가 체납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은 피고에게 지급

제시하였으나,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체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 명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 금 제○○○호로 위 기간 안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금 ○○○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.

- 3.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도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전액인 ○○○○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○.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금 ○○○○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2호증 체납관리비청구서

1. 갑 제3호증 공탁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. O O . 이 연고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○○아파트 제5동

[도로명주소]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

전유부분의 건물표시

건물의 번호 : 5 - 2- 205

구 조: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

면 적: 2층 205호 84.87 m²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

대 9,355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935500분의 7652. 끝.

			(tox)	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 <u>/</u>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송달료: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불 복 절 차 및 기 간				
기 타	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단일 때에 허용됨(대법원 ·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 사실에 관하여 주장·입· 판결). ·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차 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 유및관리에관한법률(다음 어 볼 때, 관리규약으로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련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 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, 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에 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학 리·사용 등의 사항에 관 전원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역 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적정한 유지·관리를 도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	•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•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· 위험이 있고,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·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(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25078 판결). •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,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 · 입증책임을 부담함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45259		

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 學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 한편, 외국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・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